

중재부장 1년간의 단상

성 기 문

서울제3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늘도 어김없이 9시 20분경 전화벨이 울리고, 곧 이어 여직원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중재 위원회에서 차가 왔습니다”. 대충 책상을 정리하고 청사 현관을 나서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의 시작이다. 차안에서 오늘 심리할 사건들을 대략 훑어보면서 심리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의 직책을 맡은 지 어언 1년. 매주 화요일이면 반복되는 일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임지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법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업무는 다소 생소한 분야다. 법관들이 외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은 단연 인기다.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교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중재부장 업무를 시작해보니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주 2~3건씩의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프레스센터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복잡한 사안의 경우 미리 기록을 검토하고 중재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하루의 일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가 과중하여 이러한 겸직 업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겸직 업무를 이유로 법원에서 사건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나 고려해 주지도 않는다.

언론의 영향력에 관하여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하나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총칼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펜은 칼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고 숭고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구제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당사자들과 사건을 만나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사건도 많다. 뭘 이런 걸 다 중재신청까지 할까 생각하면서도 정부기관 사건은 비교적 심리가 편하기 때문에 반갑다. 신청인이 주장을 잘 정리하고 자료도 비교적 잘 첨부하여 내기 때문이다. 가장 심리가 어려운 사

건은 사이버 종교관련 사건으로서, 쌍방을 잘 설득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건은 신청인이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해대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정적으로 심히 상처를 입었는지 위원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경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각 언론사에 따라 또 출석하는 언론사측 대리인의 성향에 따라 중재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다나 반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언론사도 있으나, 권고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인색한 언론사도 있다. 뉴스의 속보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도 있으므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도에 인색하지 않은 언론사가 사실은 더 신뢰가 간다. 그러나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허용하는 것을 언론사들이 크게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한편 요즈음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공적인 언론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포털사이트, 개인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그리고 댓글을 통해 유포되는 언론은 그 익명성과 빠른 확산성, 무한복제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 등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널리 사회문제가 된 것은 모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의 규제의 범위 밖에 있어 중재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중재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제도가 단일법으로 체계화되었고, 언론중재의 대상이 인터넷 신문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중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확대된 점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좋았으나, 심리기간이 부족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하는 등 신청남용의 문제점도 있다.

한편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도 정비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람이 느껴진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들 모두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2006년을 맞이하여 곧 임기 2년째로 접어든다. 중재부장으로서의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재판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전심전력을 하지 못함에 대하여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새해에는 보다 열심히 심리에 임하여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하여 본다. □